

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집중 투쟁 제안서

작성: 박숙경 / 작성일 : 2005. 7. 30

□ 논의의 필요성

- 최근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과 한나라당의 정화원의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기본법,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

- 장애인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일부 갖는 「장애인복지법」이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실상 기본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조차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두고 볼 때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전면개정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.

-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체 장애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응집력을 보여야 할 때 각종 장애관련 법률을 일거에 제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장애계의 단결된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

-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이루어져 온 장애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이 거의 전무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장애관련 법제논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

-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민노당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 장추련의 결정에 대응하여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비례대표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성과를 남기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, 장총련과 장총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 논의가 실제 급물살을 타고 있음.(실제 장총의 이문화정책실장이 정화원의원실의 장애인기본법 TFT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안설명시 주제발제자로 나섬. 장추련의 상임집행위원장이 김대성실장이 장향숙의원실 3대법안 TFT에 참여하고 있음)

-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반드시 개정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논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정되어야 할 것임

-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초기에 비해 열정과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법개정을 통해 남녀차별과 노동차별개선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옮겨져 사실상 사회적차별금지위원회로 통합되고 있는 과정앞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임

□ 제안내용

- 일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최근 장애인에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
- 장추련의 소속단위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지난한 논의를 통해 일구어온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논의에 소극적으로 비쳐지는 한국장총과 장총련에 장애인중의 실질적인 인권확보와 차별철폐를 위해 최우선적 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투쟁에 결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
-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2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
- 무엇보다 독립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결의와 국기인권위원회의 사회적차별금지법 관련 흐름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